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56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김석기 · 백종현 · 김 건
박형수 · 박성훈 · 성일중
윤한홍 · 박덕흠 · 김정재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중 “양을”을 “양과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를 설계수명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한 양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 설>	⑥ ----- ----- ----- ----- -----양과 「원자 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발 전용원자로를 설계수명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한 양을 ----- . 다 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 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